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44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: 강선우·강준현·김영호

김의겸 • 남인순 • 맹성규

박성준 • 백혜런 • 변재일

소병훈・송옥주・송재호

이규민 · 이학영 · 허종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
반면,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, 자극적인 표현,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, 단정적·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 용도 나타나고 있음.

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필요가 있을 것임.

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,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

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)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임) ① ~ ③ (생 략)	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
	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
	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
	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
	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
	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장애인학대보도 권고
	기준 준수 협조요청) 보건복지
	<u>부장관은 방송·신문·잡지 및</u>
	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
	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
	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
	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	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
	<u> 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</u>
	<u>다.</u>